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 윤 주 의 원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8
----------	-----

발의연월일: 2020. 11. 20 .

발 의 자 : 배윤주 의원

찬성자(8명): 배도수, 김혜경, 유정철,
이이욱, 문성덕, 정광호,
이승민, 강혜원 의원

1. 제안이유

- 통영시 평생교육진흥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의 명확화
- 평생학습도시 조성 업무 및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생학습관 지정으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준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업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 입법예고 : 2020. 11. 20. ~ 2020. 11. 26. (6일간)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2. 생략</p> <p>3. <u>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u></p> <p>4. ~ 6. 생략</p>	<p>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2. 생략</p> <p>3. <u>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u></p> <p>4. ~ 6. 생략</p>

□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2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295호, 2017. 11. 20., 일부개정]

경상남도 통영시(교육체육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센터(통영RCE) 및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0)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명칭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통영센터(통영RCE)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영RCE생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영시인재육성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RCE 지정도시간의 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교육관련 사업

제5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재육성기금 등 시의 출연금
2. 시민단체, 출향인, 기업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제9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

10. 14)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4)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당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에 귀속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의2(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0. 14)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14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